

(앞쪽)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접대비조정명세서(갑)		법 인 명		
				사업자등록번호		
구 분				금 액		
① 접대비 해당 금액						
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						
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(① - ②)						
일반 접대비 한도	④ $\frac{1,200\text{만원 (중소기업 2,400만원)}}{12} \times \text{해당 사업연도 월수()}$					
	총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20/10,000$			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10/10,000$				
		500억원 초과 금액 $\times 3/10,000$				
		⑤ 소계				
	일반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20/10,000$			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10/10,000$				
		500억원 초과 금액 $\times 3/10,000$				
		⑥ 소계				
	⑦ 수입금액 기준	$(⑤-⑥) \times 20(10)/100$				
	⑧ 일반접대비 한도액(④ + ⑥ + ⑦)					
	문화접대비 한도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)	⑨ 문화접대비 지출액				
		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(⑨와 (⑧ $\times 20/100$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)				
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(⑧ + ⑩)						
⑫ 한도초과액(③ - ⑪)						
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(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)						

작성방법

1.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"접대비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"접대비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 - * 기준금액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)
 - 경조사비: 20만원
 -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: 1만원
3. 일반접대비 한도(④ ~ ⑧)
 - 가.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,200만원, 중소기업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,400만원을 적용합니다.
 - 나.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"접대비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"접대비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라.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(④ + ⑥ + ⑦)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마. ⑦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.
 - 바.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4. 문화접대비 한도(⑨ ~ ⑩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 -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.
5.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"0"으로 적습니다.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접대비조정명세서(을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수입금액명세

구 분	①일반수입금액	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	③합 계 (① + ②)
금 액			

2. 접대비 해당 금액

④계 정 과 목					합 계
⑤계 정 금 액					
⑥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					
⑦접대비 해당 금액 (⑤ - ⑥)					
⑧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	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	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			
		⑩총 초과금액			
	국외지역 지출액 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제1호)	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			
		⑫총 지출액			
	농어민 지출액 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제2호)	⑬송금명세서 미 제출금액			
		⑭총 지출액			
	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	⑮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			
		⑯총 초과금액			
	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(⑨ + ⑪ + ⑬ + ⑮)				
⑱접 대 비 부 인 액 (⑥ + ⑰)					

작성 방법

1.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,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.
3.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(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).
4.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(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), 현금영수증, 계산서·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·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, 국외지역 지출액,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
 - 가.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: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국외지역 지출액란: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.
 - 다. 농어민 지출액란: ⑬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,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.
 - 라.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: ⑮에는 ⑩,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⑯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.
 - 마. 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, ⑪, ⑬ 및 ⑮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5. ⑱접대비부인액란: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(⑥란과 ⑰란의 합계) 적습니다.

[별지 제23호서식(병)] 삭제 <2002.3.30>